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가능 사유에 범죄예방 등 추가〉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215호)

2023.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3. 9. 5.
3. 회 부 일 : 2023.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 소방청 · 경찰청 등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사유로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범죄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재난 · 재해의 예방과 대응 등의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 · 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한정)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범죄의 예방·재발 방지, 재난·재해의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0호).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 ----- ----- ----- ----- ----- -----제10호까지에-----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 -----제11호까지에----- -----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음.¹⁾

□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국외이전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18조제1항),²⁾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제64조의2제1항제1호)

1)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 략)

2)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71조제1호) 하고 있음.

○ 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때, “특정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특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만 동의하였다는 점에서,³⁾ 제공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가 동의하

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예외적으로 ① 정보주체가 스스로 동의하였거나(제18조제2항제1호)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제2호) ③ 공익적 필요성이 큰 경우(제3호~제10호)에는,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3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표 1] 참고).

[표 1] 개인정보의 목적외이용·제3자제공이 가능한 경우(법 제18조제2항)

호	경우	비고
제1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호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공공기관만 가능
제6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호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주: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 중 제4호가 2020년 2월 4일 삭제되어, 현재 9가지 경우가 규정되어 있음.⁵⁾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목적외 이용·제공을 허용함.

□ 그런데, 현행법의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허용 사유는,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사후조치에 필요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및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 등 사전조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이 어려워 영상정보 등의 효과적인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관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한 경우에, 그 영상자료를 해당 지자체가 재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찰청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또는 소방청에 재난방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사전적으로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에 대한 찬성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범죄·재난 예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재난 예방·대응 및

5) 제4호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였는데,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 다른 조항에 별도로 규율되면서 제18조에서는 삭제되었음.

범죄 예방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 161만대가 ① 설치목적은 범죄예방·수사 50.8%, 시설안전·화재예방 43.5%, 교통단속 3.7%,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2.0%로 ② 설치주체는 중앙행정기관 17.2%, 지자체 54.2%, 교육기관 28.5%로 나뉘어 있어,⁶⁾ 하나의 CCTV에서 처리된 영상정보를 복합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이용하면 범죄예방·재난대응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예방·재발방지 및 재난·재해의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① 공공기관만이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만 목적외 이용·제공이 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한 반대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행법도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② 명백히 정보주체·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③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년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④ 공공의 안전·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제10호)에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어, 범죄 예방·재발방지 및 재난·재해의 예방·대응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음.

- 제2호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범죄 예방·재발방지 및 재난·재해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⁷⁾ 「개인정보 보호법」에 포괄적인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범죄·재난 예방·대응 관련 개별법률에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의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 제5호와 관련하여서는 ① 지자체가 설치한 CCTV 영상정보를 범죄예방을 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한 사례⁸⁾ 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선박·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대책본부장 등이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에게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의 제공을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4조의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소장이 범죄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장치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치추적관제센터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6조의2, 제16조의3).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8-127호, 앞서 언급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항공기 무선국 정기검사 목적으로 수집한 시설자의 개인정보를 조난구조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결정한 사례⁹⁾가 있는 등,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방법으로도 범죄 예방·재발방지 및 재난·재해의 예방·대응을 위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예외사유인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경우에 따라 광범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음.
 - 현행법상 예외사유는 ①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②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명백성과 급박성(긴급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와 같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 또한, 범죄의 예방·재발방지와 재난·재해의 예방·대응은 경찰, 소방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므로,¹⁰⁾ 개정안에 따른 사유를 들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셋째,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 및 재난 예방 등을 수행

이 결정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4일 개정되었음.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106-013호

10) 예컨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로 “범죄의 예방”을 명시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을 예방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하는 과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조문상으로는 목적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대상을 영상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로 지나치게 넓게 규율하고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허용은, 포괄적인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을 규율하는 법 제18조가 아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규율하는 제25조와 제25조의2¹¹⁾를

11)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하는 방향으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개정안의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예외 사유를 특정하기 어렵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 다른 법률에 재난대비·범죄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개정안의 예외 사유가 불분명하여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제공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범죄의 예방·재발방지와 재난·재해의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할지 여부는 이와 같은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말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 의 처
02)6788-5106